

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과천
번호	762

제출년월일 : 2000. 8. 26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수정이유

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30억원으로 정하려던 것을 삭제함으로서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수정

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15조 제1항을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장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제13조 ~ 제14조 (생 략) 제15조(기금의 조성) ①제14조 규 정에 의한 기금 총액은 30억원으 로 한다. ②~③ (생 략)	제3장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제13조 ~ 제14조 (현행과 같음) 제15조(기금의 조성) ① (삭 제) ①~②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검토보고

- 동 수정안은 2000년 5월 10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5월 15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의보류되었던 『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』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2000년 8월 26일 파주시장이 제출한 집행부 수정안으로 8월 28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 부 되었음.

□ 수정이유

-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여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30억원으로 정하려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수정.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금

운용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

지방자치법

제 133조 (재산및기금의설치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
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나. 내용 타당성

○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)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와 2)각종 문화예술관련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임.

○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이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30억원으로 정하려던 것을 삭제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